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3
----------	-----

2023. 6.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2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환 균형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간사,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은 제20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16조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참 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영은 2008. 2. 4.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도는 그간 별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난 '22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전북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초 조례로 '일부개정' 조례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02.01.05	02.07.11	00.10.30	02.03.25	04.05.15	01.03.16	01.09.29	13.09.30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02.06.29	05.03.05	00.12.30	07.02.02	20.11.26	03.10.20	02.05.16	09.01.07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 위원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는 회의 소집 요건과 개의·의결 정족수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다만, 안 제3조제3항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 ▲ 충청북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중 충청북도의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영 제16조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으로, 그 외의 사람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 타시도에서 시도의회의원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예가 없으나,\* 안 제3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제주 등 5개 시·도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3. 4. 7.~'23. 4.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충청북도의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존중하여 추후 충청북도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안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간사,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 (안 제6조 ~ 제8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류정책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회의(안 제5조)

## 3. 관련조문

- 위원회 회의의 출석(안 제5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위원회 출석수당(연간) :  $13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text{연1회} = 1,950\text{천원}$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간 1,950천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9,750천원 소요

다. 자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장 유희남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위원회 수당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50	1,950	1,950	1,950	9,750
	지방세	1,950	1,950	1,950	1,950	9,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